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2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서왕진·김정호·이해민

조 국 · 정춘생 · 김재원

차규근 • 신장식 • 김준형

박은정 · 강경숙 · 김선민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 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함(안 제7조제1항).
- 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10조제1항 등).
- 다.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 또는 인수에 대한 과세특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3항).
- 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관련 공 제율을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율보다 상향시키고, 녹색기술 관련 자산 투자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포함시킴(안 제2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5년 1 2월 31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호누목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 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누목 중 "발전사업"을 "발전사업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녹색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3. 연구·인력개발비 중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녹색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녹색기술연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녹색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각각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또는 녹색기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녹색기술 관련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녹색기술시설"로 한다.

3)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술시설"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5(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31일(「협동조합 기본법」 제2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호누목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3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0년 12월 31일)-----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1. -----가. ~ 구. (현행과 같음) 가. ~ 구. (생 략)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 <u>발전</u>사업 --발전사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 두. ~ 부. (생 략) 2.·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저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2. (생략)

색성징	- 기본	L법」	제2	조제1
6호에	따른	녹색	기술	관련
사업으	로서	대등	통령령	형으로
<u>정하는</u>	<u>- 것</u>			

두. ~ 부.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을
1 • 9 (혀해과 간은)

<신 설>

- 3. 연구·인력개발비 중 재생에 너지 관련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된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녹색기술"이라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이 조에서 "녹색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녹색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급하여계산한 금액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 100분의 5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40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에서 녹색기술연구개발 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u>3.</u> <u>제1호 및 제2호</u>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
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
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
여 4년간 일반연구 • 인력개발
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
구 ·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는 금액
가·나 (색 랻)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인이라 발생한 기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가.·나.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4호</u>
<u> </u>
- .

- ③ (생 략)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 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 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 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 分經理)하여야 한다.
- ⑤・⑥ (생 략)
-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 7 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 ·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 략)
 -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
<u>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u>
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녹색기술연구개발비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
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
<u>술 또는 녹색기술</u>

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 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 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 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 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 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 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 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 · 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 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u>소재·부품</u>
·장비, 국가전략기술 또는 녹
<u>색기술</u>

로 본다.

- 1. 2. (생략)
- ④ ~ ⑧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제외하되, 녹색기술 관련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
1. (현행과 같음)
2 7h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신 설>

나. (생 략)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

- 1) 2) (현행과 같음)
- 3)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술시설"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5(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

나.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5)			
	<u>신성장사업</u>	화시설,	국가
전략	약기술사업화시 <i>^</i>	설 및	녹색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술시설</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